

□ 변경 대비표

효력발생일 : 2022년 07월 07일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9조 (수익권의 분할)	제9조 (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9조 (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12조 (수익자명부)	제12조 (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2조 (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어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28조 (기준가격 산정 및 제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어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30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37조 (보수)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37조 (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신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8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일종목투자: 2. <생략>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b>「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b>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신한삼성전자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일종목투자: 2. <현행과 동일>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b>&lt;삭제&gt;</b>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대차대조표</b>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재무상태표</b>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b>한국예탁결제원</b> 에 위탁하여야 하며, <b>한국예탁결제원</b>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b>전자등록기관</b> 에 위탁하여야 하며, <b>전자등록기관</b>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b>한국예탁결제원</b>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규약 제48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b>전자등록기관</b>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환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추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가입계좌 별로 상환대금을 지급합니다.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b>한국예탁결제원</b>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b>한국예탁결제원</b>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b>전자등록기관</b>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동일>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b>전자등록기관</b>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동일>
1.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b>&lt;신설&gt;</b>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b>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b>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b>&lt;신설&gt;</b>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b>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X (해당없음)</b>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b>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b>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b>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2년 05월31일)</b>
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4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4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가 거래에 관한 사항	제4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가 거래에 관한 사항 <b>- 최근현황갱신(기간: 2021.06.01-2022.05.31)</b>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5월 31일)</b>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제2부 4. 집합투자 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b>- 최근현황 갱신</b>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 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가. 회사개요 - <b>최근현황갱신</b>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b>최근현황갱신</b> 라. 운용자산 규모 - <b>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2년 05월 31일)</b>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 이투자설명서 갱신 :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연 평균수익률)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5월 31일)</b>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대차대조표</b>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b>재무상태표</b>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 준」 개정사항 반영: 투자비용	투자비용 - 표	투자비용 - 표 <b>총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신설</b>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b>-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2년 05월 31일)</b>